

2022년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성실한 실패경험과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재기(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2월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I 모집 개요

1. 모집규모 : 총 15명

2. 모집대상 : 신청일 현재 우수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재창업자 및 초기 재창업자(경기도 소재 재창업 3년 미만)

※ “재창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先폐업 後창업)

가. 예비재창업자 : 재창업 희망 예비창업자(경기도내 창업예정자)

- ☞ 공고일 이전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
- ☞ 협약종료일 1개월 전에 경기도 내 재창업(사업자등록 필수) 및 종료 후 6개월까지 사업장·대표직 유지가 가능한 자

나. 초기재창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소재한 창업 3년 미만 기업의 대표자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2019. 2. 18. 이후 창업

- ☞ 공고일 이전에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공고일 기준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① 개인사업자 : 공고일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 ②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 ※ 단, 폐업 후 3년(부도/파산 2년) 이상 지난 후, 동종사업 개시 시 지원대상임
 - ※ 재창업일보다 폐업일이 선행되어야 함
 -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기준
- ☞ 협약만료 후 6개월까지 경기도 내 사업장 및 대표직 유지가 가능한 자

3. 참여제한 대상

참여자 자격 제한사항

①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자(기업)

- * 단,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선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 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② 경기도 및 타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자(창업지원사업 중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지원, 멘토링·컨설팅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중단(중단처분, 중도포기자) 포함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기업)

구분	제외 대상 업종	코드번호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기준

④ 경기도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 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불성실로 판명된 자(기업)

- * 재창업 전 기업의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⑥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자(기업)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⑦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⑧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및 휴업중인 자

⑨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 또는 중도 포기자

⑩ 11개 법률*(2년 이내) 범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자(기업)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II

지원 내용

1. 사업화지원금 지원

가. 지원금액 : 최종평가 등급에 따라 24 ~ 30백만원/社 지원

나. 지원비율 : 공급가액 기준 90%이내 지원, 자부담 10%이상

다. 지원방법 : 재창업자가 비용을 선 집행 후 지원금 신청

※ 단, 외주용역비·광고선전비(200만원 이상 건)는 용역업체로 직접 지급 가능

라. 지원내용

비목	내용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협약기간 내 출원한 건에 대해 등록까지 가능)
인건비	창업기업 신규고용한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전시회 참가비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관련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용 등에 관하여 집행 가능
시험인증비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및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
멘토링비	창업기업의 사업모델 개발, 제품 개선 등을 위한 멘토링 진행 후 지급하는 비용(2백만원 내, 자부담 없음)
기자재 임차비	해당 아이템 개발을 위해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부수 기자재, 서버 등을 임차하는 경비
사무실임대료	창업 아이템 개발 등을 위해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대료를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 보증금 및 관리비는 집행 불가
교육훈련비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홈페이지는 3백만원 내)
세무회계기장비	창업기업 세무/회계 기장 대행료 지원(1백만원 내)

※ 지원내용 세부사항은 운영지침을 따름

2. 창업공간 제공

- 지원내용 : 수원 창업베이스캠프 공동창업실(개방형) 무료 제공
- 주요기능 : 창업자간 정보 교류 및 협력공간, 창업 상담 지원

시설명		창업베이스캠프			
시설 현황	좌석	30 석			
	면적	576㎡(174평)			
	기타시설	상담실, 소그룹회의실			
인프라 지원		☞ 사무용책상, 공용 복사기 및 팩스, 휴게실 등 공용시설 운영			

- 협약기간 내 사업장 등록이 가능하며 협약종료 후 6개월까지 연장 가능

3. 재창업자 역량강화 지원

가. 재창업 교육 지원

- 교육시간 : 총 12시간 내외
- 교육내용 : 실패원인 분석 및 주요 실패사례 등 기초 소양, BM 고도화 등 재창업 역량강화 교육

나. 네트워킹 운영

- 지원내용 : 재창업자와 전문가, 창업자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등

다. 재창업자 투자 역량강화

- 지원내용 : 투자유치교육, 데모데이, 멘토링 등 재창업자 투자유치 역량 강화와 자금조달 기회 제공

참여자 유의사항

- 참여자 중 예비창업자는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경기도에 재창업해야하며 사업장은 사업협약만료 이후 6개월까지 경기도 소재 및 대표직 유지하여야 함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경기도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 본 사업 참여 중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할 경우 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조치
- 「경기도 범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범 위반 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2022.1.7.)」에 따라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범위반 사실(1회 이상)이 있는 기업 및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범위반 사실 확인시(범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 사업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위반사실 적용 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Ⅲ

신청 · 접수 방법

1. 신청기간 : 모집공고일 ~ 2022년 3월 10일(목) 18:00까지
2. 신청방법 : 경기스타트업 플랫폼(www.gsp.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온라인접수 시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최종접수됨

※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에 기업정보를 성실히 기입하여야함

※ 반드시 대표자명으로 신청하여야 함(직원명으로 신청불가)

3. 제출서류(증빙서류 제출 안내문 필독)

[공통 제출서류]

- 1)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 2) [제1호 서식] 참여신청서
- 3) [제3호 서식] 개인(기업)신용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 4) 국세 완납증명서
- 5) 지방세 완납증명서
- 6) 신분증 사본
- 7) 폐업사실증명원(기 폐업한 모든 사업장 발급분)
- 8) 채무변제 관련 서류*(해당시)
*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문, 변제계획인가 결정문, 채무조정합의서 등
- 9) 신청자 자가점검표(첨부양식)

[대상자별 제출서류]

가. 예비재창업자

- 사실증명원(현재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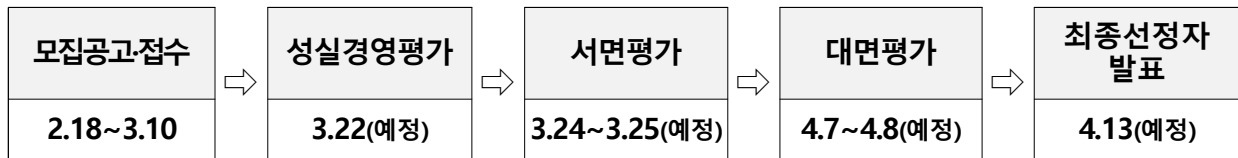
나. 초기재창업자

- 사실증명원(총 사업자등록내역 확인)
- [제4-1호 서식]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제4-2호 서식] 기업의 범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약약서
-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확인서
- 하도급법 위반 사실 확인서
-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기업만 해당)

※ 발급처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등

I

모집 일정



- 사전(요건)검토 : 신청기업의 신청자격* 사전검토
* 경기도 소재, 폐업 여부, 재창업 여부 증빙 등
- 성실경영평가 : 재창업 전 과거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여부 등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등을 평가(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 활용)
- 서면평가 :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등 사업계획 중심의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방식의 대면평가 후 최종선정
- 협약기간 : 최종선정된 달의 1일부터 '22년 10월말까지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육성팀, 031-259-6087

■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그 외 기타사항은 본 사업 세부운영기준 적용

사업참여자 제재 및 환수기준

구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중단	☐ 보고서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	3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유사한 제출 자료 (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협약 종료 이후도 해당)	5년		
	☐ 사업결과물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 협약기간 내 무혐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사업비 사용가능	—	—	일시중단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	—	—
	☐ 고의성이 있는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2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1년	전액환수	협약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기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별도제재
포기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사업지원금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	1년	—	협약취소
	☐ 사업지원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2년	전액환수	
	☐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	
	☐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지원중단	협약취소
	☐ 기타 창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지원중단	협약취소
실패	☐ 사업계획 미 이행 및 휴·폐업한 경우	1년	전액환수	—
	☐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창업포함)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
	☐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
	☐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		—
성실실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휴·폐업한 경우	—	지원 중단	—
	☐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실패한 경우	—	—	—

-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참여자(대표자)가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사업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 정해진 기간 내 사업지원금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진행
-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